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재)대전테크노파크는 대전 수출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수출새싹기업 대상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형 기업으로 전환·육성하고자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을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7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I 공고 개요

□ 개 요

- 사업목적 : 민간역량을 활용한 수출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수출인식·역량 강화 및 수출활성화 도모
- 공고기간 : 2021. 5. 17(월) ~ 5. 24(월) / 18:00까지(접수 자동마감 유의)
- 지원대상
 - 수출초보기업 중 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기업

* 대전 주력산업 : 차세대무선통신융합산업, 지능형로봇산업, 바이오메디컬산업 ※[붙임 1] 참조

| 구분 | 소비재 | 산업재 |
|--------|-------------------|-------------------|
| 수출초보기업 | '20년도 수출액 10만불 이하 | '20년도 수출액 30만불 이하 |

* '20년 수출액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에서 발급한 (직접)수출실적 증명서 기준

- 단, 본사가 타 지역 소재 및 도소매업 지원대상 제외
- 지원규모 및 사업기간 : 1개사 / 협약일로부터 ~ 11. 30
- 지원내용 : 수출 민간전문역량 기관(업)에서 새싹기업의 지원수요 및 보유역량에 맞춰 시장조사-마케팅-계약 전반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가급적 단기간 내 수출실적 발생 가능 기업 중심 지원)

II 지원방식 및 내용

□ 지원방식 및 지원금액

○ 지원방식

- (OKTA활용형) 수출 민간전문역량(세계한인무역협회(OKTA))활용하여 새싹기업의 수출 활동 전반 지원

· 사업비 지급 : 총사업비는 컨소시엄 수행기관(OKTA)에 전액지급하며, 지원금은 분할지급(선금 50%, 잔금 50%) ※선정기업 직접지원 불가

○ 지원금액 : 18백만원(TP지원금)

※ 총 사업비(TP지원금+기업부담금)의 10% 이상 기업부담 필수 매칭(부가세 별도 기업부담)

예시) 지원금 18,000천원 일 경우 기업부담금(총 사업비의 10%이상) 2,000천원 현금 매칭 시 총 사업비는 20,000천원(총사업비 = 18,000천원/0.9 = 20,000천원)

□ 지원 프로그램 및 내용

○ OKTA활용형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 메뉴판

- 지원 프로그램별 지원한도(기업당)는 최대 책정 금액을 말하며, 지원 프로그램별 지원한도 이내 책정 가능함

- 사업신청 전 공급기관(업)과 충분한 협의 및 계획 수립 후 수출지원프로그램 선택 필요. 또한,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또는 신청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최대)금액 |
|------------|--------------------------------------------------------------------------------------------------------------------------------------------------------------------|----------|
| 타당성 및 시장조사 | ○ 해외 현지 시장성 테스트 지원 * 온·오프라인 마케팅(판매, 판촉전, 전시, 바이어 반응 측정 등)을 통한 현지 반응 측정 | 7백만원 |
| 유통채널 입점대행 | ○ 국가별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대행 및 컨설팅 지원 * 온라인 : 국가별 유력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입점(판매자 등록 등) 대행 및 컨설팅 지원 * 오프라인 : 국가별 유력 백화점, 마트, 면세점, 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입점 대행 및 컨설팅 지원 | 7백만원 |
| 해외인증 | ○ 국가별 제품인증 및 허가 * 사업기간 중 인증서 발급 불가시 불인정 | 5백만원 |
| 전시회 | ○ 현지 전시회 지원비 * 참가비, 기자재 임차료, 주스 디자인 및 부착물(현수막 등) 제작 비용에 한함 | 8백만원 |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최대)금액 |
|----------|----------------------------------------------------------------------------------------------------------------------------------------------------------------------------------------------------------------------------------------------------------------------------|----------|
| 바이어미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의향 보유 바이어 온오프라인 미팅 및 출장비 * 구매의향 보유 바이어 발굴 및 상담 대행 및 출장비 지원 * 항공료 : 항공 이동 소요시간이 50분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출장자 1인에 한하여 지원 * 온라인 바이어미팅은 [새싹기업-공급기관-바이어]가 참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별첨1] 온라인 바이어 미팅 기준단가를 따름 | 6백만원 |
| 샘플발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주력제품 샘플 발송비 | 3백만원 |
| 통·번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제품(기업) 홍보물 현지화,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 통·번역 목적 서비스에 한하며, 홍보물 등 제작비용 미포함 | 2백만원 |
| 홍보물 제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지원 *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홍보 동영상, 웹페이지 제작 등 | 4백만원 |
| 기술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활동을 위한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제품고급화 등 기술지원 | 5백만원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컨설팅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TP협의 |
| (필수)공통경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소시엄 유형의 경우에 한하여 공통경비 산정 * 사업 운영 및 관리비용 등, 총사업비(지원금+민간부담금)의 15% | 15% |

Ⅲ 평가 절차 및 기준

- 1차 사전검토 : 참여제한 여부, 지원 자격(서류) 검토
- 2차 선정평가 : 제출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발표평가**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평가표(안)〉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
|-------------------|-----------|----------------------------------------------------------------------------------------------------------------------------------|
| 지원의 필요성 (30) | 지원의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싹기업(CEO)의 수출의지 • 본 사업 지원방식(전문역량활용)과 적합성 |
| | 수출 준비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준비 진행 정도 (제품완성도, 매뉴얼, 홍보물, 포장, 해외인증, 홈페이지 등) |
| 지원내용의 타당성 (50) | 사업목표의 명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수출) 목표의 명확성 |
| | 지원내용의 적절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및 전략의 적절성 • 추진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 • 전문역량기관(업)의 전문성(역량, 평판 등) |
| | 사업비 적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산출근거의 타당성 |
| 기대효과 (20) | 수출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 수행을 통한 수출실적 달성(단기간) 가능성 |
| | 사후활용 관리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활용방안 및 관리계획의 적절성 |

IV 컨소시엄 방법

□ 컨소시엄 매칭 방법

| | |
|------------------------------|---------------------------------------------------------------------|
| 유형 | ● OKTA 활용형 |
| 컨소시엄 대상 (민간전문역량 기관(업)) | 세계한인무역협회 (OKTA(옥타) 회원) |
| 방법 | gbiz.okta.net (가입 및 OKTA매칭) |
| 협약 방식 | (계약) 새싹기업⇔OKTA회원 (협약) TP⇔OKTA사무국 (사업비지급) TP⇒OKTA사무국⇒OKTA회원 |

V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1. 5. 17(월) ~ 5. 24(월) 18:00(시스템 자동 마감 유의)
- 신청방법 : 대전TP 사업정보관리시스템(<http://pims.djtp.or.kr>) 신청 및 접수

| 절차 | | 비고 |
|-------|---------------------------------------------------------------------------------------------|-----------------------------------------------------------------------------|
| [1단계] | 기업회원(사업자등록번호)으로 로그인 후 해당사업 공고문 신청 버튼 클릭 | ※ 회원이 아닌 경우, 기업회원 가입 |
| ▣ | | |
| [2단계] | 주요항목 작성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록 (업로드) 완료 후 임시저장 또는 최종신청 (단, 임시저장은 최종신청이 아니므로 꼭 최종신청을 클릭해야함) | ※ 접수 마감일 18시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반드시 마감시간 이전 최종신청 버튼 클릭 (가급적 마감일 17시까지 최종제출) |

- 담당자 : 기업지원단 기업성장팀 이선희 책임 (☎ 042-930-4852)

□ 제출 서류

- 접수서류 순서대로 압축(zip)하여 첨부파일 등록, 최종선정 기업대상 원본서류 및 협약 필요서류 별도 제출 예정

*필요 서류 누락 시 사전검토에서 제외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서류 등록

| 구분 | 등록서류 | | 비고 |
|----------------|------|----------------------------------------------------------------------------------------------------------------|---------|
| 필수 제출 서류 | 1 | 신청서(사업계획서, 신용정보 조회동의서(자필서명 必) 포함) | 날인 必 |
| | 2 | 사업자등록증(신청기업, 공급기업 모두 제출) | - |
| | 3 | 법인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제외 |
| | 4 | 결산 재무제표('18, '19, '20년) ↳ 회계사(또는 세무사) 확인 자료 또는 표준 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 ※ 단, 20년 미결산 시 부가세증명원(국세청 발급)+가결산 자료 제출 | - |
| | 5 | '20년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협회 등 발급) ※ 수출액이 "0\$"인 경우에도 제출 | - |
| | 6 | 국세 납세 증명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발급가능 | - |
| | 7 | 지방세 납세증명서 ※민원24(minwon.go.kr)에서 발급가능 | - |
| 해당시 | 8 | 수출 관련된 기타자료 | - |

VI 유의사항

- 부가세 및 각종세금(TAX)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 OKTA 등 컨소시엄형 공통경비 필수 선택(총 사업비의 15%)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참가신청기업은 10%이상 책정 필수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평가 후 평균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관련 정량수치 작성 시 기업별 2020년 결산이 미확정 된 경우 '20년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그 외의 수치는 가결산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되 선정평가 및 그 이후 최종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수치가 상당 부분 상이할 시(자격 부합기준 미달) 지정취소가 될 수 있음 ※ 사업신청 시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 지원기업의 경우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관리 등을 위해 매출, 수출, 신규 고용 등 지원종료 후 2년간 성과 모니터링에 참여해야함
- 다음의 경우 선정 이후 지원중단과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부정확한 방법으로 사업비 사용이 확인된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 컨소시엄 구성 기업 간 사업 추진이 불성실 등 원활하지 않은 경우

[참고]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3조 4항 참고]

1.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2.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3.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5.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6.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특히, 수출실적 허위 기재·제출 등)
7. 기타 본 사업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회계연도(‘20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
※사업개시일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 에는 ‘BBB+’, ‘BBB’, ‘BBB-’ 를 모두 포함
9. 최근 회계연도(‘20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10.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20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붙임 1. 대전지역주력산업 산업분류코드(KSIC-10)
2. 지역별 온라인 바이어 미팅 기준단가

[붙임 1] 대전지역주력산업 산업분류코드(KSIC-10)

| 산업명 | | 코드 | 산업분류명 |
|-------------------|------|-------|------------------------------|
| 차세대 무선통신 융합 | 핵심코드 | 26129 |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
| |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58222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지능형 로봇산업 | 핵심코드 | 27215 |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 | | 27219 | 기타 측정, 시험, 향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
| |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 | | 58222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6201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 바이오 메디컬산업 | 핵심코드 | 10797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 | | 20423 | 화장품 제조업 |
| |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 | 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 | 139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 | | 27213 |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
| | | 21101 |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
| |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

[붙임 2] 지역별 온라인 바이어미팅 기준단가

| 권역 | NO | 지역 | 표준단가(원) | 비고 | 권역 | NO | 지역 | 표준단가(원) | 비고 |
|-------|------|---------|-----------|----------|---------------|----------|---------|----------|---------|
| 중국 지역 | 1 | 베이징 | 360,000 | | 중동 지역 | 65 | 무스카트 | 500,000 | |
| | 2 | 상하이 | 390,000 | | | 66 | 알제 | 340,000 | |
| | 3 | 광저우 | 390,000 | | | 67 | 이스탄불 | 490,000 | |
| | 4 | 다롄 | 320,000 | | | 68 | 도하 | 410,000 | |
| | 5 | 칭두 | 350,000 | | 아프리카 지역 | 69 | 요하네스버그 | 480,000 | |
| | 6 | 칭다오 | 280,000 | | | 70 | 라고스 | 390,000 | |
| | 7 | 우한 | 310,000 | | | 71 | 나이로비 | 440,000 | |
| | 8 | 샤먼 | 260,000 | | | 72 | 카르툼 | 340,000 | |
| | 9 | 시안 | 320,000 | | | 73 | 아디스아바바 | 460,000 | |
| | 10 | 선양 | 330,000 | | | 74 | 아크라 | 390,000 | |
| | 11 | 난징 | 330,000 | | | 75 | 다레살람 | 380,000 | |
| | 12 | 충칭 | 320,000 | | | 76 | 마푸투 | 510,000 | |
| | 13 | 창사 | 340,000 | | | 77 | 아비장 | 370,000 | |
| | 14 | 정저우 | 310,000 | | | 일본 지역 | 78 | 도쿄 | 700,000 |
| | 15 | 항저우 | 360,000 | | 79 | | 오사카 | 710,000 | |
| | 16 | 톈진 | 340,000 | | 80 | | 후쿠오카 | 650,000 | |
| | 17 | 선전 | 370,000 | | 81 | | 나고야 | 650,000 | |
| | 18 | 창춘 | 330,000 | | 동남아 대양주 지역 | 82 | 싱가포르 | 590,000 | |
| | 19 | 하얼빈 | 330,000 | | | 83 | 마닐라 | 450,000 | |
| | 20 | 스촨창 | 320,000 | | | 84 | 방콕 | 530,000 | |
| | 21 | 홍콩 | 610,000 | | | 85 | 쿠알라룸푸르 | 410,000 | |
| | 22 | 타이베이 | 460,000 | | | 86 | 양곤 | 300,000 | |
| 유럽 지역 | 23 | 프랑크푸르트 | 620,000 | | | 87 | 자카르타 | 540,000 | |
| | 24 | 함부르크 | 620,000 | | | 88 | 수라바야 | 490,000 | |
| | 25 | 뮌헨 | 560,000 | | | 89 | 호치민 | 630,000 | |
| | 26 | 파리 | 790,000 | | | 90 | 하노이 | 680,000 | |
| | 27 | 런던 | 700,000 | | | 91 | 다낭 | 470,000 | |
| | 28 | 스톡홀름 | 920,000 | | | 92 | 프놈펜 | 420,000 | |
| | 29 | 코펜하겐 | 1,190,000 | | | 93 | 비엔티안 | 250,000 | |
| | 30 | 암스테르담 | 820,000 | | | 94 | 시드니 | 650,000 | |
| | 31 | 브뤼셀 | 650,000 | | | 95 | 멜버른 | 640,000 | |
| | 32 | 밀라노 | 660,000 | | | 96 | 오클랜드 | 570,000 | |
| | 33 | 취리히 | 1,080,000 | | | 97 | 뉴델리 | 340,000 | |
| | 34 | 마드리드 | 610,000 | | | 서남아 지역 | 98 | 뭄바이 | 480,000 |
| | 35 | 빈 | 620,000 | | | | | 99 | 첸나이 |
| | 36 | 아테네 | 650,000 | | 100 | | 벵갈루루 | 360,000 | |
| | 37 | 헬싱키 | 560,000 | | 101 | | 콜카타 | 360,000 | |
| | 38 | 부다페스트 | 630,000 | | 102 | | 암다바드 | 330,000 | |
| | 39 | 바르샤바 | 580,000 | | 103 | | 카라치 | 310,000 | |
| | 40 | 프라하 | 590,000 | | 104 | | 다카 | 270,000 | |
| | 41 | 부쿠레슈티 | 510,000 | | 105 | | 콜롬보 | 280,000 | |
| | 42 | 자그레브 | 460,000 | | 106 | | 멕시코시티 | 440,000 | |
| | 43 | 소피아 | 470,000 | | 107 | | 파나마 | 440,000 | |
| | 44 | 베오그라드 | 440,000 | | 108 | 과테말라 | 340,000 | | |
| | 45 | 브라티슬라바 | 510,000 | | 109 | 아바나 | 270,000 | | |
| 북미 지역 | 46 | 뉴욕 | 780,000 | | 110 | 산토도밍고 | 440,000 | | |
| | 47 | 로스앤젤레스 | 740,000 | | 111 | 상파울루 | 690,000 | | |
| | 48 | 시카고 | 710,000 | | 112 | 리마 | 440,000 | | |
| | 49 | 달라스 | 680,000 | | 113 | 보고타 | 440,000 | | |
| | 50 | 워싱턴 | 590,000 | | 114 | 부에노스아이레스 | 630,000 | | |
| | 51 | 실리콘밸리 | 680,000 | | 115 | 산티아고 | 580,000 | | |
| | 52 | 디트로이트 | 620,000 | | 116 | 아순시온 | 350,000 | | |
| | 53 | 애틀랜타 | 660,000 | | 117 | 키토 | 340,000 | | |
| | 54 | 토론토 | 470,000 | | 중남미 지역 | 118 | 모스크바 | 660,000 | |
| | 55 | 밴쿠버 | 480,000 | | | 119 | 블라디보스톡 | 430,000 | |
| 중동 지역 | 56 | 두바이 | 570,000 | 한인 기타 | | 120 | 노보시비르스크 | 340,000 | |
| | | | 530,000 | | | | 121 | 상트페테르부르크 | 590,000 |
| | 57 | 카이로 | 460,000 | | | 122 | 키예프 | 390,000 | |
| | 58 | 테헤란 | 420,000 | | | 123 | 알마티 | 560,000 | |
| | 59 | 텔아비브 | 590,000 | | | 124 | 바쿠 | 370,000 | |
| | 60 | 리야드 | 600,000 | | | 125 | 타슈켄트 | 280,000 | |
| | 61 | 암만 | 360,000 | | | 126 | 울란바토르 | 300,000 | |
| | 62 | 트리폴리 | 290,000 | | | 127 | 민스크 | 320,000 | |
| | 63 | 카사블랑카 | 400,000 | | | | | | |
| 64 | 쿠웨이트 | 400,000 | | | | | | | |

*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국가(지역)의 경우 소득수준이 유사한 인접 국가(지역)의 표준단가를 준용